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제 정 일	2014. 5. 1
		개 정 일	2021. 4.15
		개정차수	2차
		담당부서	학사운영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21. 4.15)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 3조 (기능) 위원회는 각 호 사항을 심의 한다.

1. 편입학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2. 정원외 입학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3.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군 복무 기간 중 교육훈련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해외연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근무한 사실에 따라 인정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6. 봉사활동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3. 1)

7. 비교과 과정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3. 1)

8. 평생 직업교육과 관련된 선행경험학습인정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3. 1)

9.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제 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조 (회의록)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